

대구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3190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31909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가소634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3. 27.

판결선고 2024. 6. 1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가소634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2의 나 1)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나아가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과 해악성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와 나눈 통화내용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그대로 교부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교부한 현금 중 대부분은 성명불상자 등 다른 공모자들이 취득하여 피고가 이 사건으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더라도 가해자인 피고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50만 원(= 1,500만 원 × 0.5)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3. 5.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세영, 판사 조세진, 판사 김래니